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가족돌봄청
년은 평균 46.1개월 간, 주당 21.6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
는 상황으로, 75.6%가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동년

또래 대비 7배 이상의 우울감을 느낄 정도로 경제적, 정신적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경제·정서적 불안을 일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나이 규정으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조손가정의 경우 초등학생이 가족돌봄 의무를 지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현황에 대한 적절한 통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14세 미만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도 지원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조손가정과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비롯하여 아픈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제고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